

明代の宦官廿四衙門에 대하여

高 昌 錫

〈目 次〉

- | | |
|----------------|--------------|
| I. 序 言 | IV. 廿四衙門의 職掌 |
| II. 廿四衙門의 設置過程 | V. 結 言 |
| III. 廿四衙門의 組織 | |

I. 序 言

中國은 “宦官의 나라”라고 할 만큼 文獻上으로는 이미 周代로부터 清代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였다.¹⁾ 中國의 歷代王朝 중에서도 後漢·唐·明은 그 禍가 또한 至大하였다.²⁾ 즉 後漢代의 宦官은 外戚과 더불어 그 세력이 至大하였으니 後漢末의 「黨錮之禍」는 그 대표적인 것이며, 唐代에는 밖으로는 節度使가, 안으로는 宦官이 세력을 잡았는데 宦官은 정치·군사 등의 諸權을 장악하여 그 地位가 상당했고 때문에 唐末의 諸天子는 宦官에 의해 廢立 혹은 弑逆되어 그 지위도 宦官에게 좌우되었으니 「定策國老門生天子」³⁾라 한 말은 그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 1) 中國 古代 殷王朝의 遺跡에서 발견된 甲骨文字에는 殷代에 이미 宦官이 存在했음을 示唆하고 있다. 즉 殷의 武丁王이 포로가 된 羌人(今, 티벳種族)을 宦官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최근 日本의 甲骨學의 權威인 白川靜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三田村泰助: 『宦官』 東京 中公新書7, 中央公論社 1963), p.7.
- 2) 趙翼의 『廿二史劄記』 卷20 唐代宦官之禍條에는 「東漢及前明 宦官之禍烈矣 然猶竊主權以肆虐天下 至唐則宦官之權 反在人主之上 立君弑君廢君 有同兒戲 實古來未有之變也」라 하였고 同書 卷35 明代宦官條에는 「有明一代宦官之禍 視唐雖稍輕 然至劉瑾魏忠賢 亦不減東漢末造矣」라 하였다.
- 3) 이것은 唐朝最後의 昭宗을 세운 宦官 楊復恭이 昭宗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한데에 怒하여 한 말 가운데 「承天門者 隋家舊業也 兒但積粟訓兵 何進奉爲 吾披荆榛立天子 既得位 乃廢定

그런데 明代의 宦官이 後漢·唐代와 다른 점은, 後漢代에 있어서는 外戚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 宦官을 重用한 결과 그 廢害가 심했으나 明代에는 外戚의 발호가 없었고⁴⁾ 또 비록 專制主義 國家라고는 하나 皇帝獨裁權이 확립되지 못했던 後漢이나 唐代와는 달리 皇帝의 廢立이나 弑逆이 없었고 다만 皇帝가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즉 皇帝의 신임을 얻었을 때에 한해서 그 專權이 가능했던 데 있는 것 같다.

그러나 明代 宦官의 禍 또한 後漢·唐代에 비해서 조금도 덜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明末清初의 大學者인 黃宗羲가 그의 名著 『明夷待訪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데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宦官의 禍는 漢·唐·宋을 거쳐서 계속하여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明과 같이 심하였던 일은 없다. 漢·唐·宋에는 朝廷의 정치에 관여한 宦官이 있었으나 宦官에 봉사한 조정의 정치는 없었다. 지금은 저 宰相이나 六部는 조정의 정치가 행하여지는 곳인데도 上書의 批答은 먼저 口傳하고 후에 票擬가 있으며 天下의 재정은 帝室의 재정이 우선이고 국가의 재정은 追後의 문제다. 천하의 刑獄은 東廠 즉 宮中の 사법기관이 先行하고⁵⁾ 法司 즉 국가의 사법기관은 뒷전이다. 그 밖에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宰相이나 六部는 宦官에게 봉사하는 人員에 지나지 않는다. 君主가 천하를 자기의 집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府庫의 재물을 자기의 所有라고 생각하고 국토방위의 兵을 자기의 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末世의 君主의 所行이다. 지금은 의복 음식·馬匹·兵器·禮樂·財貨·건축·器材 등은 다 宮城에서 몇 리 이내의 지역에서 조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리고 정부에 설치한 관청이나 정부가 공급하는 재정도 드디어 천자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보고 떠들썩하게 다투며 천자의 천하를 宮城에서 몇 리 이내의 地域에 지나지 않게 한 것은 다 宦官이 그렇게 한 것이다. 漢·唐·宋의 宦官은 君主가 暗愚함을 이용하여 비로소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다. 明에서는 機構가 이미 完成되고 서로 緊密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毅宗과 같은 현명한 君主도 처음으로 여기에 의심을 품었으나 드디어는 이것을 폐지하지 못하고 말았으며 마침내 死境에 이르러서도 廷臣과 한번 만날 수도 없었다. 宦官의 禍가 이처럼 심한 일은 없었다.」⁶⁾

策國老 奈負心門生何 門生謂天子也」라 한데서 나온 말로 定策國老란 試驗官인 국가의 元老를 의미하고 門生은 受驗生을 말한 것으로 宦官을 試驗官에, 君主를 시험에 의해서 及落이 결정되는 受驗生에 비유한 것이다. (『新唐書』 卷208 宦官 楊復恭傳)

- 4) 清水泰次는 漢·明의 宦官의 禍를 비교하여 설명한 가운데 漢은 家族制度가 完成되지 않은 때이므로 宦官 외에 外戚이 勢力을 떨쳤으나 明代에는 家族制度가 完成되어 外戚이 세력을 떨칠 餘地가 없었다고 하였다. 즉 朱姓으로 固定되어 있어서 異姓은 介入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 虛를 이용하여 宦官이 外戚 대신에 專橫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

(清水泰次: 明代의 宦官 (『史觀』 1, 1931), pp.150~151.)

- 5) 東廠에 대해서는 拙稿: 「明代의 東廠·西廠에 대한 考察」(『慶北史學』 5, 1982), pp.167~199參照.

- 6) 全海宗譯: 『明夷待訪錄』 (三星文化文庫 2, 1971), pp.132~133 引用.

즉 明代 宦官의 禍가 後漢·唐代를 능가하며 더우기 방대한 조직의 宦官衙門도 정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明代 宦官의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권의 중추부에 참여하게 된 것은 宣宗 때부터였다. 원래 皇帝 앞으로 올리는 章奏는 內閣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條旨와 票擬를 작성한다. 條旨란 각 기관에서 제출한 章奏에 붙이는 內閣의 의견서이며 票擬란 그 上奏 사항에 관해 내릴 결재의 原案인 것이다. 皇帝는 내각에서 올린 條旨에 의해 가부를 판단하고 票擬를 기준으로 批答을 朱書한다.⁷⁾ 그러나 皇帝의 업무량이 워낙 많았으므로 차츰 文字를 아는 측근의 宦官이 대신 精書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곧 제도화한 것이다. 더우기 明代에는 제도상으로 아무리 높은 官吏라도 內廷에는 출입할 수가 없었다. 즉 內廷의 지배권은 宦官에게 있었다. 內閣은 원래 皇帝의 측근정치의 산물인데 皇帝와의 가까기로 말하면 外廷의 內閣大學士들 보다는 宦官 쪽이 월등히 가까웠다. 또 外臣과 內臣의 차이가 있으며 內臣은 곧 皇帝의 가정의 구성원이었다. 그리고 內閣大學士가 皇帝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皇帝의公私에 해당하는 일은 자연히 宦官이 수행하게 되었다.⁸⁾ 이것이 또한 宦官이 實權을 쥐게 된 하나의 原因이었다.

뿐만 아니라 明代 宦官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의 방대한 조직이 작용했던 것이다. 明代의 宦官 조직은 宮廷內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과 宮廷外 즉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宮廷內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조직이 곧 廿四衙門이며 宦官의 大本營이었다. 따라서 內廷의 宦官은 外廷의 정부와는 별개의 조직에 속했고 이 內廷의 宦官은 일체 外廷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의 기강이나 법률외에 초월하여 있어 각 부분의 일을 주관하는 자는 모두 이 중에서 파견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임시직도 적지 않았으며 前代까지만 해도 일반 관리가 관장했던 것을 明代에 와서 宦官의 것으로 전환된 것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의 宦官衙門은 中國 歷代 宦官制度上 유래가 없었던 일이며 그들의 專權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정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그들의 專權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捷徑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廿四衙門의 諸職掌은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한 독재군주의 內廷 생활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稿는 廿四衙門의 設置過程과 組織 및 그 職掌에 대해서 考察하고자 한 것이다.

7) 山本隆義: 「明代의 內閣 -- 特にその職掌と制度及び閣臣の出自について --」(『東洋史研究』 20-2, 1971) pp.24~52, 同 『中國政治別度の研究』(京都, 東洋史研究會 1968) 參照.

8) 三田村泰助: 前掲書 p.66.

II. 廿四衙門의 設置過程

明代에 宦官衙門이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吳元年の 일이다. 『太祖實錄』에 의하면

「吳元年九月丁亥 置內使監正四品…」

이라 하여 吳元年 9월에 宦官衙門으로서 內使監이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吳元年이라 함은 明의 太祖 朱元璋이 舉兵한 후 群臣의 추대를 받아 吳王을 칭한 해이며 明의 건국 1년전이다. 明의 太祖는 이때부터 국가 건설의 기초작업으로서 同年 7월에 太常寺 司農 大理 將作 등 4司를 설치하였고 8월에는 圓丘 方丘 및 社稷壇을 설치해서 山川에 祭祀를 지내기도 하였다. 또 9월에는 光祿寺의 前身으로서 宣徽院을 설치했는가 하면 10월에는 國子監의 官制가 정해지고 御史臺가 설치되는 등 모두가 하나 같이 국가 건설이란 목적을 위해서 취해진 것이었다.¹⁰⁾ 따라서, 內使監의 설치도 그 一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당시 吳의 세력은 江南에 한정되어 있었고 元朝 등 餘他 세력과도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諸官署와 마찬가지로 宦官衙門도 간략하였다. 그러나 明 건국 이후 太祖一代에 걸쳐서 점차 機構가 확장되고 定員이나 品秩도 增減·昇降이 되는 등 改變이 가해지면서 이른바 廿四衙門이 성립된 것이다. 廿四衙門이라 함은 宦官의 諸官署 중에서 12監 4司 8局을 總稱한 것이다.

그러면 먼저 12監의 設置過程부터 考察해 보고자 한다.

현의상 定制 이후의 12監을 열거하면 司禮監, 內官監, 御用監, 司設監, 御馬監, 神宮監, 尙膳監, 尙寶監, 印綬監, 直殿監, 尙衣監, 都知監 등이다. 그런데 이상의 12監의 윤곽이 드러난 것은 洪武 末年에 가서였다. 즉 『明史』 卷 74 職官志 宦官條에,

「(洪武)二十八年重定內官監·司·庫·局與諸門官 并東宮六局 王府承奉等官職秩 凡內官監十一 曰神宮監 曰尙寶監 曰孝陵神宮監 曰尙膳監 曰尙衣監 曰司設監 曰內官監 曰司禮監 曰御馬監 曰印綬監 曰直殿監……」

「(洪武)三十年置都知監……」

9) 『明史』 卷 74 職官志 3 宦官條에도 「初 吳元年置內史監」이라 하였다. 다만 『實錄』에는 「使」라 하였고 『明史』에는 「史」라 하였으나 여기서는 『實錄』의 記載를 따르고자 한다.

10) 間野潛龍: 「明代의 光祿寺とその監察について」(『東洋史研究』 29~2.3, 1970) p.163

이라 하여 12監 중에서 11監은 洪武 28年에 설치되었고 同 30年에는 都知監이 增設되어 12監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두 記事에 나타난 12監의 명칭과 定制 이후의 12監의 명칭사이에 약간의 相異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孝陵神宮監과 御用監의 相異이다. 그러나 이것은 洪武 末年에 12監이 일단 성립되었으나 建文 元年의 改革, 永樂年間의 洪武舊制에의 復歸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다. 이것은 비단 12監 뿐만 아니라 全 宦官衙門이 이미 洪武初부터 정비 과정에서 置廢가 반복되는 등 改變이 가해지고 있다.

12監의 경우 정비되는 과정에서 일시 설치되었다가 革罷된 것으로는 內使監, 御用監, 內倉監, 神宮內使監, 尙冠監, 尙履監, 尙佩監, 孝陵神宮監 등이 있다. 이 중에서 御用監은 永樂年間に 부활되어 12監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孝陵神宮監은 北京遷都 이후 南京에 그대로 存續되고 있다. 위 두 衙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가하기로 한다. 그리고 12監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었던 것은 內使監이었다. 즉 이에 대하여는 우선 다음과 같은 記事를 들 수가 있다.

「(A) 初 吳元年置內史監 設監令 正四品 丞 正五品 奉御 從五品 內史 正七品 典簿 正八品 (B) 後 改置內使監 御用監 各設令一人 正三品 丞二人 從三品 奉御 正六品 典簿 正七品 (C) 御馬司司正 正五品 副 從五品 尙寶兼守殿 尙冠 尙衣 尙佩 尙履 尙藥 紀事等奉御 俱正六品」
(『明史』 卷 74 職官志 3 宦官條)

(A)에 의하면 처음에는 內使監만이 설치되고 여기에 監令(正四品), 監丞(正五品), 奉御(從五品), 內史(正七品), 典簿(正八品) 등의 屬官을 두었으나 뒤에 改革되고 있다. 즉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內使監에서 御用監이 增設되었으며 (A)의 內史職이 혁파되었는가 하면 品秩에 있어서 奉御職만이 낮아지고 餘他는 모두 上昇되었다. 定員도 「令一人 丞二人」이라 하여 정해지고 있으며 (C)에서는 또 御馬司가 설치되었으며 尙寶, 尙衣, 尙冠, 尙佩, 尙履, 尙藥, 紀事 등 奉御職도 增置되었다. 더우기 前揭書 洪武 2年條에는

「(D) 定置內使監奉御六十人 尙寶一人 尙冠七人 尙衣十人 尙佩九人 尙藥七人 紀事二人 執膳四人 司脯二人 司香四人 太廟司香四人 涓潔二人 (E) 置御馬 御用二司 司設正一人 副二人 (F) 內倉監 設令一人 丞二人……」

이라 하여 內使監의 屬官으로 執膳, 司脯, 司香, 太廟司香, 涓潔 등 奉御職이 다시 增置되었다. 그런데 「奉御六十人」이라 하여 尙寶 이하 職名과 定員을 나열하고 있으나 실제의 수효는 52인으로 8인이 모자라며 앞서 引用한 (C)記事와 비교하여 보면 「尙履」 2자가 누락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太祖實錄』 同年 8月條에는 「尙佩九人」 다음에 「尙履八人」 四字가 明記되

어 있다. 11) 따라서 「尙履」 8人을 더해야 奉御 60人에 합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E)의 記事에서 보면 「置御馬御用二司云云」하였으나 앞서 引用한 (B)(C) 記事에 의하면 御用監, 御馬司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또 前掲書 洪武 3年條에는 內使監과 御用監의 品秩을 고쳐 從三品으로 하였으며, 12) 4年條에는 다시 그 品秩을 고치고 差等있게 散官을 수여하고 있다. 13) 이것은 그 간에 置廢·昇降이 자주 반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6년에 와서는 御用監이 다시 供奉司로, 2年((F)記事)에 설치되었던 內倉監이 內府倉으로 14) 각각 격하, 개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品秩도 降下되고 있다. 더우기 격하, 개칭된 이후는 그 명칭이 洪武年間에는 史書에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御用監에 대해서는 前掲書 卷 304 宦官傳序에

「嘗用杜安道爲御用監 安道外臣也 以攝工侍帝數十年 帷幄討議皆與知 性縝密不泄 過諸大臣前一揖不啓口而退 太祖愛之然亡他寵異 後遷出爲光祿寺卿」

이라 하여 太祖는 일찍이 杜安道를 御用監으로 등용한 일이 있었는데 그는 宦官이 아니라 外臣이었던 점으로 보아 明初에는 국가 機密 따위의 누설을 막기 위해 心服의 外臣을 등용했었음도 엿볼 수가 있다.

한편 內使監은 洪武 14年에 頒行된 『皇明祖訓錄』 15)에는 그 명칭이 보이나 17年 이후로는 역시 그 명칭이 史書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內使監이 처음에는 自體內에 諸奉御를 두어서 宦官의 諸般事務를 관장하다가 宦官衙門이 확장되고 또 그 職掌이 細分化되면서부터는 어느 한 가지 職掌만을 관장하다가 그것도 다른 衙門으로 移管되면서 革罷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內使監의 諸奉御職 중에서 尙寶, 尙衣 兩者는 監으로 승격되었고, 尙冠, 尙佩, 尙履도 일시 監으로 승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皇明祖訓錄』에는 內使監의 직장을 다음과 같이 記載하고 있다.

「內使監：監令掌冕弁冠帽 丞爲之佐 凡造冠帽結棕冠綱巾鋪翠穿珠梳剃諸匠咸屬焉監令監丞尙冠奉御」

11) 黃彰健은 「論皇明祖訓錄所記明初宦官制度」(臺北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集刊 32, 1960) p.81.에서 『明史』는 誤本 『實錄』인 『北平圖書館本』을 原本으로 하여 編纂한 것으로, 正本인 『廣方言館本』이나 『抱經樓本』과는 대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誤라 하였다.

12) 『明史』 卷 74 職官志 3 宦官條에 「三年……改內使監 御用監秩皆從三品」이라 하였다.

13) 同上書에 「四年復悉差其品秩 授以散官 乃改內使監正五品……」이라 하였다.

14) 同上書에 「六年改御用監爲供奉司 秩從七品設官五人 內倉監爲內府倉……」이라 하였다.

15) 『皇明祖訓錄』은 洪武 14年에 頒行된 것으로 吳元年부터 洪武 14年까지의 宦官의 建置沿革을 記載하고 있다. (黃彰健：前掲論文 以下 同)

이에 의하면 內使監은 御帽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본 듯 하며, 洪武 17年 이후 御用的 冠冕과 袍服 履寫 따위를 관장한 衙門은 尙衣監이므로 여기에 통합된 것이다. 그리고 洪武 10年에는 神宮內使監이 설치되었고 16) 『皇明祖訓錄』에도 그 명칭이 보이고 있으나 職掌에 대하여는 記載가 없다. 따라서 神宮內使監도 17年에는 神宮監으로 통합된 것 같이 보인다.

이외에 洪武 12年에는 尙衣, 尙冠, 尙履, 尙佩 등 4監이 增設되고 17) 있는데 그 후 계속하여 존속한 것은 尙衣監 뿐이다. 尙冠監은 『皇明祖訓錄』에 이미 그 명칭이 보이지 아니하며 尙履, 尙佩 2監만이 그 職掌을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尙履監, 監令掌靴履 丞爲之佐 凡結棕靴」

「尙佩監, 監令掌佩帶 丞爲之佐 監令監丞尙佩奉御」

그러나 위의 2監도 洪武 17年 이후로는 그 명칭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것들도 그 職掌 내용으로 보아 尙衣監으로 통합된 것이다. 그리고 前掲書에는 尙寶監의 명칭이 보이며, 이것은 이후 계속하여 존속되었다. 18)

이와 같이 改變이 가해지면서 洪武 17年에는 內官監, 神宮監, 尙寶監, 尙衣監, 尙膳監, 司設監, 司禮監, 御馬監, 直殿監 등 9監이 정비되고 있다. 19) 그 중에서 御馬監은 洪武 2年에 설치되었던 御馬司가 監으로 승격된 것이고 尙衣監은 12年에, 尙寶監은 14년에 각각 설치되었다. 그리고 司禮監을 제외한 나머지 5監은 모두 17년에 새로 설치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明代 宦官衙門 가운데 最高 衙門이라 할 司禮監의 설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明史』 卷 74 職官志 3 宦官條에 보면

「(G) (洪武)六年……尋置紀事司 以宦者張瑄爲司正 秩正七品(H) 又考前代糾劾內官之法 置內正司 設司正一人 正七品 司副一人 從七品 專糾內官失儀及不法者(I) 旋改爲典禮司 又改爲典禮紀察司 陞其品秩 司正陞正六品 司副陞從六品」

16) 『明史』 職官志 宦官條에 「十年置神宮內使監 設監令 正五品……」이라 하였다.

17) 同上書에 「十二年置尙衣 尙冠 尙履三監 針工 皮作 巾帽三局 改尙佩局爲尙佩監」이라 하였다.

18) 『皇明祖訓錄』에는 尙寶監의 職掌을 記載하여 「監令丞掌御寶 晝夜常川於內宮門聽候 所掌匙鑰 不許離身 凡有動止 謹護御寶 典簿掌簿籍」이라 하였으며 『明通監』 卷 19 宣宗 宣德元年 7月條에는 「初 洪武間 太祖嚴禁宦官毋得識字 後設內官監典簿 掌文籍 以通書算 小內使爲之 又設尙寶監 掌御宝 凶書 皆僅識字 不明其義……」라 하여 御宝 凶書를 관장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19) 『明史』 職官志 宦官條에는 「十七年更定內官諸監 庫 局品職 內官監 神宮監 尙寶監 尙衣監 尙膳監 司設監 司禮監 御馬監 直殿監」이라 하였고 『實錄』 同年條에는 그 職掌이 各 記載되어 있다.

이라 한 記事가 있다. 위의 (G)에 의하면 洪武 6 年에 紀事司를 설치하고 宦官 張翥으로 司正을 삼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앞서 引用한 바 있는 (C)의 記事에 의하면 이미 吳元年에 內使監의 奉御職으로서 「紀事」가 설치되었으며, (D)의 記事에서는 內使監의 奉御 60 人 가운데 「紀事」의 定員이 2 人이라 記載하고 있다. 따라서 「紀事」는 吳元年에 奉御職으로 처음 설치되었다가 洪武 6 年에 紀事司로 승격된 것이며, 이것이 다시 同年 11 月 典禮司가 典禮紀察司로 바꾸어질 때 紀事司는 이 典禮紀察司에 통합된 것이다. 즉 典禮紀察司는 紀事司와 典禮司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典禮司는 본래 어떠한 衙門이었던가? 위의 引用 (H)에 의하면 前代에 宦官을 糾劾했던 法을 考究하여 內正司를 설치하고 오로지 宦官의 失儀와 不法者를 糾察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太祖實錄』에도 典禮紀察司의 建置沿革을 記載하여

「洪武六年十月壬辰 命考究前代糾劾內官之法 禮部議置內正司……專掌糾察內官失儀及不法者 十一月辛亥 更內正司爲典禮司……庚申 改典禮司爲典禮紀察司」

라 하였다. 즉 內正司가 典禮司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前述의 紀事司와 통합되어 前禮紀察司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 職掌에 대하여는 『皇明祖訓錄』에

「典禮紀察司 司正副掌內府一應禮儀 欽紀御前一應文字 凡聖旨裁決機務 已未發放 須要紀錄親切 御前題奏 及糾劾內官內使非違不公等事 而造筆墨表背匠亦屬焉」

이라 하여 內府의 禮儀를 관장하며 또한 宦官의 非違와 不公等事를 糾劾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의 職掌은 『太祖實錄』 洪武 17 年條의 司禮監의 職掌과 같은 것이다.²⁰⁾ 따라서 司禮監은 典禮紀察司가 同年에 와서 승격된 것이다.

다시 12 監의 설치 과정으로 넘어와 보면 洪武 28 年에는 印授監 孝陵神宮監이 增置되어 11 監이 되었으며 30 年에는 都知監이 설치되어 12 監이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前述한 바와 같이 定制 이후에 와서는 孝陵神宮監 대신 御用監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北京 遷都 이후 諸般制度를 祖訓에 따라 설치할 때 宦官衙門도 동시에 설치되었으나 그중 孝陵神宮監은 南京官制로 존속시키고 그 대신에 國初에 설치했던 御用監을 부활시킨 것이다. 즉 成祖는 北京으로 遷都한 후 南京을 留都로 삼아서 일체의 官府·人員은 北京과 꼭 같이 설치했는데 宦官의 각 衙門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皇帝가 없는 대신에 守備一人을 두어서 관할케 하였다. 仁宗 때에 와서는 宦官 1 人을 파견해서 같이 守備케 했는데 이때 파견된 宦官이 곧 皇帝를 대리하며 그

20) 『實錄』洪武 17 年條의 司禮監의 職掌 내용은 本稿 3 節 司禮監條 내용의 記事 參照.

職務 또한 莫重했다. 즉 劉若愚의 『酌中志』卷 16 에는 이 守備宦官을 말하여

「護衛留都 爲三千里外親臣 轄南京內府二十四衙門 孝陵神宮監官」

이라 하였다. 즉 위의 記事에서 보면 陪都 南京에도 宦官의 廿四衙門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며 孝陵神宮監은 별도로 존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明史』 卷 74 職官志 3 宦官條에는

「諸陵神宮監：各陵俱設神宮監太監守護」

라 하여 明代에는 各陵마다 神宮監을 설치하고 太監을 두어서 守護케 하였던 것이다. (孝陵은 곧 太祖의 陵을 말한다.) 그리고 御用監이 永樂年間に 부활되었음을 示唆하는 記事로는 前掲書 卷 89 兵志 1 京營條에

「成祖增京衛爲七十二……已得邊外降丁三千 立營分五司……掌傳令營旗牌 御用監監甲 尙冠 尙衣 尙履什物上直官軍」

이라 하여 御用監의 명칭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4 司는 惜薪司, 鐘鼓司, 寶鈔司, 混堂司 등이며 이들의 설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吳元년에 御馬司가 설치되었고 洪武 2 年に 御用司가 일시 설치된 적이 있었으나 뒤에 兩者는 御馬監, 御用監으로 昇格되었다. 그리고 6 년에는 紀事司 內正司가 설치되고 있으나 이 역시 兩者가 통합되어 典禮紀察使로 변질되었다가 17 年に 司禮監으로 昇格되었음은 앞서 記述한 바이다. 또 9 년에는 兵仗 繩頭 2 司가 설치되었으나 21) 兵仗司는 28 年に 兵仗局으로 변질되었으며 繩頭司는 司禮監으로 통합되었다. 그것은 『皇明祖訓錄』에

「繩頭司 司正副掌治內官內使之犯罪者」

라 하여 그 職掌 내용이 司禮監의 職掌과 같으며 洪武 17 年 司禮監의 設置 이후에는 그 명칭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司에 해당하는 衙門으로는 지금까지 置廢만 반복되었을 뿐 定制 이후까지 常置된 것은 없으며, 다만 4 司 중에서 惜薪司와 鐘鼓司만이 洪武 28 年に 설치되고 22) 寶鈔司와

21) 『明史』 職官志 宦官條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實錄』 洪武 9 年 8 月條에는 「置顏料 司 菜 司牧 巾帽 針工 皮作六局 兵仗繩頭二司 秩俱正六品 副從六品」이라 하였다.

22) 同上書에 「二十八年重定內官監·司·庫·局與諸門官……司二 曰鐘鼓司曰惜薪司……」라 하였다.

混堂司는 洪武年間에는 그 명칭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이 역시 永樂年間に 설치된 것으로 추측된다.

끝으로 定制 이후의 8局은 兵仗局, 銀作局, 浣衣局, 巾帽局, 鍼工局, 內織染局, 酒醋麵局, 司苑局 등이며, 이들의 설치 과정에서는 우선 尙酒, 尙醋, 尙麵, 尙染 등 4局이 洪武 2년에 설치되었다.²³⁾ 그 중에서 尙染局은 17년에는 織染局이라 하였다가 28년에는 內織染局으로 바뀌어지고 있으며 尙酒, 尙醋, 尙麵 3局도 통합되어 酒醋麵局이라 하였다. 그리고 9년에는 顏料, 司菜, 司牧, 巾帽, 針工, 皮作 등 6局이 설치되었는데²⁴⁾, 그 중에서 巾帽, 針工, 皮作 3局은 그 명칭이 12년까지는 보이나 17년부터는 巾帽, 針工 2局만이 계속하여 常置되었고(針工局은 定制 이후에는 鍼工局으로 개칭되었다) 皮作局은 30년에 銀作局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간에 혁파되었다가 銀作局이라는 명칭으로 부활된 것 같다. 그리고 顏料, 司牧 2局은 17년까지는 司菜局이 변질된 司苑局과 함께 존속했으나 그 이후에는 顏料局이 內織染局으로, 司牧局은 司苑局으로 각기 통합된 것으로 보아진다.²⁵⁾ 또 12년에는 尙佩局을 尙佩監으로 삼았다고²⁶⁾ 하였고 14년에는 御藥局의 명칭이 보이고 있으나²⁷⁾ 그 설치 연대는 未詳이다.

이렇게 보면 8局은 洪武 28년과 30년에 이르러 12監과 같이 거의 정비되고 있으며(28년에는 兵仗局, 酒醋麵局, 司苑局, 內織染局, 巾帽局, 針工局, 30년에는 銀作局) 浣衣局만 永樂年間に 설치되었다.

이상에서 廿四衙門의 설치 과정을 대충 살펴 보았거니와 明代의 宦官 廿四衙門은 太祖 一代에 걸쳐 거의 정비되었고 그 이후에 와서는 약간의 변질이 있었으나, 항상 「祖制」라 하여 존중되고 또 답습되고 있다.

23) 同上書 洪武 2年條에 「置尙酒 尙醋 尙麵 尙染四局 局設正一人 副二人」이라 보인다.

24) 注 21) 參照.

25) 『皇明祖訓錄』에는 司牧局과 司菜局의 職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司牧局 局正副掌牧養羊鷩雞鴨 司菜局 局正副掌種菜供用」

26) 注 17) 參照.

27) 『皇明祖訓錄』에는 御藥局의 職掌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局正掌監同御醫 修合藥餌 如法煎調進御 副之爲佐 典簿堂文案簿籍 并牧支藥餌數目 凡外科接骨等醫咸屬之」. 明代에는 御用の 藥物이나 天子 혹은 東宮의 御醫는 太醫院에 屬했으므로 그에 통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Ⅲ. 廿四衙門의 組織

宦官이라 함은 통상적인 명칭을 떠나 특수한 임무를 띠고 宮廷에서 奉仕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의 職官도 入宮한 햇수나 皇帝의 信任度 그들이 맡고 있는 職掌에 따라 高低가 정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宮廷에서 奉仕한 宦官이 모두 職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肉體勞動으로 일생을 마치는 宦官도 無數하니 이를 일러 「淨軍」이라 하며²⁸⁾ 또 宦官이 처음 入宮하게 되면 有力한 宦官 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名下」라 부르기도 한다.²⁹⁾ 여기서는 廿四衙門에 소속된 宦官의 職官 品秩 및 그 定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의상 이와 관련된 내용의 記事를 『明史』 卷 74 職官志 3 宦官條에서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十二監 每監太監一員 正四品 左右少監各一員 從四品 左右監丞各一員 正五品 典簿一員 正六品 長隨 奉御無定員 從六品 此洪武舊制也 後漸更革詳見各條下

司禮監 提督太監一員 掌印太監一員 秉筆太監 隨堂太監 書籍名畫等庫掌司 內書堂掌司 六科廓掌司 典簿無定員

內官監 掌印太監一員 總理 管理 僉書 典簿 掌司 寫字 監工無定員

御用監 掌印太監一員 裏外監把總二員 典簿 掌司 寫字 監工無定員

司設監 員同內官監

御馬監 掌印 監督 提督太監各一員 騰驤四衛營各設監官 掌司 典簿 寫字 擊馬等員 象房有掌司等員

神宮監 掌印太監一員 僉書 掌司 管理無定員

尙膳監 掌印太監一員 提督光祿太監一員 總理一員 管理 僉書 掌司 寫字 監工及各牛羊等房廠監工無定員

尙寶監 掌印太監一員 僉書 掌司無定員

印綬監 員同尙寶

直殿監 員同上

尙衣監 掌印太監一員 管理 僉書 掌司 監工無定員

都知監 掌印太監一員 僉書 掌司 長隨 奉御無定員

28) 淨軍이라 함은 “몸을 깨끗이 한 사람들”이란 뜻이며 『霜猿集』에 「天啓中 魏璫遇京師 淨身者四萬人 號曰淨軍」이라 하였다.

29) 名下에 대해서는 『明史』卷 305 宦官張鯨傳에 「內豎初入宮 必投一大璫爲主 謂之名下」라 보인다.

이상의 12監의 記事 내용에서 우선 엿볼 수 있는 것은 洪武舊制가 그 이후에 와서 대폭 변질되고 있는 사실이다. 즉 洪武舊制에 있어서는 職官 品秩 및 그 定員이 明示되고 있으나 그 이후에 와서는 品秩에 대한 記載가 없다. 이것은 職官이나 定員은 대폭 확충되었으나 品秩에 있어서는 洪武舊制와 같기 때문에 記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12監의 職官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2監의 경우 洪武舊制의 내용은 太監 少監 監丞 등의 高級宦官과 典簿 長隨 奉御 등의 下級宦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太監은 宦官衙門의 最高의 職位이며 責任者(長官)였다. 그 다음이 太監을 보좌하는 少監 監丞의 순이며 이들은 때로는 鎮守 등의 임무를 띠고 지방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³⁰⁾ 이들 高級宦官은 入宮한 햇수가 비교적 오래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으며, 반대로 入宮한 햇수가 日淺하거나 능력이 없는 자는 典簿나 長隨 奉御 등의 下級職을 담당할 뿐이었다.³¹⁾ 그런데 洪武舊制 이후에 와서는 이들 宦官들의 職位도 各衙門에서 담당하는 職掌에 따라 여러 가지 職銜으로 나누어지고 또 各衙門의 需要度에 따라 下級職도 많이 증가되고 있다. 즉 各監마다 長官格인 掌印太監, 事務長格인 掌司는 예외없이 설치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尙書가 9개監에, 典簿 管理 寫字 監工이 각기 5개監에, 總理가 3개監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各監의 특성에 따른 職銜으로는 司禮監에 提督太監과 秉筆·隨堂太監이 있고 御用監에는 把總이, 御馬監에는 監督太監, 提督太監이 있는가 하면 騰驤과 四衛營에 監官 擊馬 등이 배치되기도 하였으며 부속기관인 象房에는 掌司 등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또 尙膳監에는 提督光祿太監이 설치되었고 長隨³²⁾ 奉御職은 定制 이후에는 都知監에만 설치되었다.

다음 4司에 대해서는 역시 前掲書에

「四司 舊制每司各司正一人 正五品 左右司副各一人 從五品 後漸更易 詳下
 惜薪司 掌印太監一員 總理 尙書 掌道 掌司 寫字 監工及外廠 北廠 南廠 新南廠 新西廠各設尙書
 監工無定員
 鐘鼓司 掌印太監一員 尙書 司房 學藝官無定員
 寶鈔司 掌印太監一員 尙書 管理 監工無定員
 混堂司 掌印太監一員 尙書 監工無定員

30) 丁易: 『明代特務政治』(東京 汲古書院 影印版 1971) p.15.

31) 同上書 pp.15 ~ 16.

32) 趙翼의 前掲書 卷36 長隨條에 「長隨는 본래 宦官의 次等으로서 役을 大璫(宦官)에게서 받는 자」라 하였고 또 俗에는 이르기를 「長隨는 雇用된 僕人으로 明初에는 參隨라 하였다」고 하였다.

이라 하여 洪武舊制는各司에 司正과 左右司副만이 설치되었으나 定制 이후는 長官級인 掌印太監과 僉書가 4개司에, 監工은 3개司에 각각 설치되었다. 더우기 惜薪司의 경우는 그 관할하에 있는 諸廠에도 僉書職과 監工職을 두고 있다.

8局的 경우도 前揭書에

「八局 舊制每局大使一人 正五品 左右副使各一人 從五品
 兵仗局 掌印太監一員 提督軍器庫太監一員 管理 僉書 掌司 寫字 監工無定員
 銀作局 掌印太監一員 管理 僉書 寫字 監工無定員
 浣衣局 掌印太監一員 僉書 監工無定員
 巾帽局 掌印太監一員 管理 僉書 掌司 監工無定員
 鍼工局 員同巾帽局
 內織染局 員同上
 酒醋麵局 員同上
 司苑局 員同上

이라 하여 洪武舊制는 局마다 大使와 左右副使가 있었으나 定制 이후에 와서는 역시 많이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관급인 掌印太監과 僉書 및 監工은 8개局에 다 설치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管理가 7개局에 掌司는 6개局에, 寫字는 兵仗局과 銀作局에만 설치되었다. 특히 兵仗局에는 提督軍器庫太監이 또 있다.

이상이 廿四衙門의 職官, 즉 職位와 職銜의 내용이며 다음으로 宦官의 品秩을 보면, 앞서引用한 바 있는 『明史』 職官志 宦官條에는 吳元年 內使監을 설치할 당초의 監令(뒤에 太監)이 正三品으로 昇格되는 등 여러 차례 昇降이 반복되다가 洪武末年에 와서는 그 최고 등급인 太監이 正四品으로 고정되었다. 正四品은 外省에 比하면 各省의 次官 다음가는 높은 品秩이었다. 그리고 少監이 從四品 監丞이 正五品 典簿가 正六品 長隨 奉御가 각각 從六品이었다. 4司의 경우는 司正이 正五品 司副가 從五品이었고 8局的 大使는 正五品 副使가 從五品이었다. 이렇게 보면 최고 正四品에서 최하 從六品까지로 그 品秩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끝으로 廿四衙門의 定員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記事들이 보인다.

「(J) 夫內侍之設 國初蓋有定制 今或一監而叢一二十人 或一事參五六輩」
 (『明史』 卷164 李俊傳)

「(K) 祖宗御內官 恩不泛施 法不輕貸 內府二十四監局及在外管事者並有常員 近年諸監局掌印僉事多至三四十人 他管事無數 留都亦然 悉陵奢暴 蠹蝕民膏」
 (『明通鑑』 卷40 孝宗 弘治17年條)

위의 두 記事에 의하면 廿四衙門에는 원래 定員이 있었던것 같이 보인다. 즉 (J)의 「國初皆有定制」나 (K)의 「並有常員」이라 한 것은 國初에 이미 常員(定員)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더우기 洪武舊制인 경우는 앞서 引用한 바 있는 『明史』 職官志 宦官條에 보면 廿四衙門의 沿革을 記述하는 가운데 각 職官의 定員을 1명 내지 2명 등으로 항상 記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職官上의 定員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그것은 前揭書에 記載된 定制 이후의 내용에 太監 少監 監丞 등 고급환관인 경우는 대체로 정원이 주어져 있으나 下級宦官 예를 들면 總理 管理 僉書 掌司 寫字 監工 등은 無定員으로 記載되어 있는 데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이는 각 衙門이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增減했음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定制 이후에 와서는 定員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위의 (J)에 의하면 憲宗 成化年間에는 一監의 定員이 혹 10~20명 정도였던 것이 그다음 孝宗 弘治年間에 이르러서는 각 衙門의 掌印太監과 僉事(僉書)가 많을 때는 30~40명에 이르렀고 기타 管事(管理)는 無數하다 할 정도로 增員이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武宗 正德元年 大學士 劉健의 上奏文에는

「內府諸監局簽書多者至百數十人」

(『明史』 卷181 劉健傳)

이라 하여 각 衙門의 僉書만도 많은 곳은 百數十人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이는 僉書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衙門의 人員이 그 만큼 증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成化年間에는 廿四衙門을 비롯한 諸衙門의 宦官數가 이미 一萬餘에 달하고 있다.³³⁾ 그러나 이러한 數值도 각 衙門에 所屬되어 있는 人員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타 外邊에 파견되어 있거나 혹은 內廷에 있다 하더라도 각 衙門에 所屬되지 못한 一般 宦官의 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니, 만일 그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에 달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이미 國初부터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太祖는 漢·唐代 宦官의 弊害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한 弊害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처음에는 宦官의 수를 百名이하로 제한 한 바 있었다.³⁴⁾ 그러나 太祖一代를 통해 宦官 廿四衙門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宦官이 필요했기 때문에 洪武 1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37명의 환관이 증원되었고³⁵⁾ 그 이후에도

33) 憲宗 成化年間의 右副都御史 彭韶의 上奏文 가운데 「監局內臣 數以萬計 利源兵柄 盡以付之 犯法縱奸 一切容貸」라 하였다. (『明史』 卷183 彭韶傳)

34) 『明史』卷304 宦官傳序에 「明太祖既定江左 鑒前代之失 置宦者不及百人」이라 보인다.

35) 黃彰健의 前揭論文 p.84에 『實錄』을 引用하여 「洪武十五年丙戌 增設內使三百六十一, 丙申增設內使七十六人」이라 보인다.

安南 高麗 등지로부터 2百餘의 宦官이 進貢된 바 있었다.³⁶⁾ 그러므로 太祖 때에도 이미 그의 羽翼을 삼을 정도로 많은 수의 宦官이 충원되었던 것이니, 이를 염려한 開國功臣 李文忠은 “建國의 功臣들을 誅殺할 것이 아니라 左右에 있는 宦官數부터 줄이는 것이 급선무” 라고 건의한 바 있었다.³⁷⁾ 이리하여 神宗 萬歷年間에는

「萬歷六年七月…詔 司禮監會同禮部揀選內監三千五百七十名應用」 于是禮科給事中李天植上言
『階下襁服初年 允收馬安等三千二百五十人 部覆永不爲例 今文獻之中 兩收數千 俸門日啓 覬澤者
多 儻得收回成命 散比黨與 上也 不然 乞裁取其半』 疏入報聞」 (『明通監』 卷 67 神宗 萬曆六年
七月條)

이러한 바와 같이 神宗은 萬歷元年과 六年 두 차례에 걸쳐 宦官을 收進하였는데 그 수가 6820 (元년에 3250 명, 6년에 3570 명)명에 달하였고 이때에 司禮監과 禮部가 會同하여 宦官을 揀選하고 또 應用하였다는 것이다.

이렇듯 宦官의 수는 시대가 지날 수록 증가되어 明末 李自成이 北京을 함락시킬 때에는 宮中 宦官의 수가 무려 7萬에 달하였다고³⁸⁾ 하며, 더우기 淸의 聖祖가 康熙 18年 당시 大學士들에게 諭告하여 한 말 가운데에는

「明季事蹟 卿等所知往往紙上陳言 萬歷以後所用內監 曾有在御前復役者 故朕知之獨詳 明朝…宦
女九千人內監至十萬人」
(『余金監朝新語』 卷 40)³⁹⁾

이러한 것 처럼 明代의 宦官數가 十萬 女官이 9千人이라 하였다. 때문에 이들 중에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여 飢死하는 자가 있었다고 할 정도다.⁴⁰⁾

그러면 이렇듯 많은 宦官을 어떠한 方法으로 供給했던 것일까?

宦官의 供給은 時代에 따라 變하고 있으나 明代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方法에 依했다. 즉 異國人的 俘虜, 外國으로부터의 貢進者, 自宮者(宦官志願者)와 準自宮者(他意志願者) 등이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太祖 때에는 安南이나 高麗 등지로부터 宦官을 수입하기도 하였으며 成祖 때에는 通古스系의 女真人을 後妃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女真人의 宦官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36) 同上書 p.93 參照.

37) 『明史』 卷126 李文忠傳, 丁易의 前揭書 p.22 參照.

38) 丁易의 前揭書 p.23 에는 『王譽昌崇禎宮詞』를 引用하여 「(李自成破北京)時 中璫七萬人皆喧嘩走 官人亦奔迸都市」라 하였다.

39) 同上書 p.23.

40) 三田村泰助의 前揭書 p.30.

또 英宗 때에는 貴州의 苗氏의 子弟 千5百餘名을 去勢하였는데 그 중에서 3百餘名이 病死했기 때문에 그 숫자 만큼 다시 보충했다고도 한다.⁴¹⁾ 뿐만 아니라 雲南을 정벌했을 때도 많은 雲南人을 宦官으로 만든 적이 있었다, 이것은 물론 出征한 司領官이나 監察官인 宦官이 독단으로 한 것으로 뒤에 이 사실을 안 皇帝가 놀라 힐문하자 “蠻賊들이 장차 반란을 일으킬까 하여 그 種族을 滅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宦官의 供給은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아무야되었고, 將軍들도 自家에서 宦官을 使役하기도 하였다.⁴²⁾

이처럼 外國人의 俘虜나 貢進者를 宦官으로 채용했던 것은 宮廷 비밀의 유지나 他民族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被征服民을 宦官으로 삼았던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太祖는 即位初에 福建 廣東 등지의 勢力家가 他人의 子弟를 私白(宦官)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禁命을 내린 일이 있었다.⁴³⁾ 그러나 後代로 내려 올수록 自宮에 의한 宦官志願者가 증가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⁴⁴⁾ 自宮이란 刑罰 기타 官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마음대로 去勢를 행하는 것이다. 다만 自宮이라 해도 自身の, 혹은 他人의 子弟에 행하는 경우(準自宮者)와 成人이 스스로 행하는 경우(自宮者)의 구별은 있었다. 특히 明代에는 自宮해서 仕官을 구하는 것은 “一身의 富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제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므로 自宮에 대한 禁止令이 처음 내려진 것도 明代였다.⁴⁵⁾ 즉 不孝罪, 反逆罪와 같은 처벌규정을 정하여 死刑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 一族이나 洞里的 村長 등에까지 連帶責任을 지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宦官勢力의 跋扈로 인하여 禁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즉 『武宗實錄』 正德 2年 9月條에는

「時宦官竊擁者 澤及九族 愚民競鬻其子若孫 以圖富貴 有一村至數百人者 雖嚴禁 亦不之止也」

라 하여 “때로 宦官은 皇帝를 背後에서 조종하여 權勢를 잡으니 그 恩澤이 9族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를 보고 愚民은 다투어서 자신의 子나 孫을 去勢하여 富貴를 꿈꾼다. 중에는 한 마을에서 數百人을 헤아릴 정도로 아무리 嚴禁해도 조금도 그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인 것이다. 더욱이 明末 天啓元년에 宦官의 缺員 3千人을 모집한 바 應募者가 二萬餘人에 달했다고 하였다.⁴⁶⁾ 이처럼 自宮 또는 準自宮者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富貴

41) 同上書 p.31.

42) 同上書 p.31.

43) 『明史』 卷2 太祖本紀 5年 5月條에 「閩·粵豪家母鬻人子爲火者 犯者抵罪」라 보인다.

44) 清水泰次:「自宮宦官の研究」(『史學雜誌』 43の1,1932) pp.83~128 參照.

45) 同上 論文에 의하면 成祖19년에 自宮에 대한 禁令이 내려지고 있다. p.91. 그리고 『大明會典』 卷80 自宮禁例條에는 「令 凡自宮者 以不孝論 軍犯罪及本管頭目總小旗 民犯罪 及有司里老」라 하였다.

46) 同上 論文 p.127.

를 도모하기 위해서 혹은 국가의 강제노동을 두려워한 나머지 賤民들이 擇한 방법이었다. 47)

IV. 廿四衙門의 職掌

明代 初期에는 일시적이기는 하나 吏部에서 宦官을 통할했던것 같다. 48) 그것은 沈德符의 『野獲編補遺』 卷一에

「本朝內臣俱爲吏部所領 蓋周禮冢宰統闈人之禮 至永樂時歸其於內 而史諱之」

라 하였으며 永樂時에 이르러 비로소 그 통할 사무가 內府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즉 吏部에서는 太祖의 令에 의해 宦官의 諸司官制와 그 品秩을 정한 바도 있었다. 49) 그런데 宦官의 통할 사무가 內部로 돌아갔다는 것은 곧 司禮監에 歸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司禮監은 成祖 때부터 宦官의 首席 衙門으로서 餘他 宦官衙門을 통할했으며 50) 따라서 吏部에서 宦官을 통할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극히 짧았던 것이며 그것도 어디까지나 형식에 불과하였다. 왜냐하면 吳元년에 宦官衙門이 처음 설치되면서부터 그들의 職掌도 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明代 宦官의 職掌에 대하여는 『明史』를 비롯한 諸書에 記述되어 있으나 51) 여기서는 『明史』 卷74 職官志3 宦官條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의상 12監부터 職掌 내용을 引用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47) 顧炎武의 『日知錄』 卷9 政事 宦官條에 「景泰以來 乃有自官以來進者 朝廷雖暫罪之 向終收以爲用 故近幾之民 畏避蘇役 希覲富貴者 倣効成風 往往自狀其身及其子孫 日赴禮部投進 自是以後 日積月累 千百成群 其爲國之害甚矣」라 보인다.
- 48) 그런데 『明史』 卷189 劉棻傳에는 「武宗立 成詔陳八事 中言 『且國初宦官悉隸禮部 秩不過四品 職不過掃除 今請仍隸之部 易置司禮 俾供雜役……』」이라 하여 禮部에 소속되었던것 같이 기록하였으나 여기서는 吏部說에 따른다.
- 49) 『明通鑑』 太祖 洪武2年 8月條에 「命吏部內侍官制」라 하였고 同 4年 閏4月條에는 「命吏部定 內監官品秩 自監正令五品以下至七品有差」라 하였다.
- 50) 沈德符의 『野獲編補遺』 卷1에 「司禮監今爲十二監中第一署 其長與首揆對柄機要 僉書秉筆與文書房則職同次相……其宦官在別署者 見之必叩頭稱爲上司」라 한에서도 알 수 있다.
- 51) 本稿에서는 『明史』 職官志 외에 『太祖實錄』 洪武 17,28年條, 黃彰健 所引의 『皇明祖訓錄』, 劉若愚의 『酌中志』 등을 參照하였다. 三田村泰助도 『酌中志』를 引用하였다. 『宦官』(東京 中公新書 7, 1963) pp.68~74.

「①司禮監 提督掌管理皇城內一應儀禮刑名 及鈐束長隨當差聽事各役 關防門禁催督光祿供應等事 掌印掌理內外章奏及御前勘合 乘筆隨堂掌章奏文書 照關票批硃掌司各掌所司 典簿典記奏章及諸出納號簿

②內官監 掌木石瓦土塔材東行西行油漆婚禮火藥十作 及米監庫營造庫皇壇庫 凡國家營造宮室陵墓并銅錫粧奩 器用監泳審諸事

③御用監 凡御前所用圍屏 牀榻諸木器 及紫檀象牙鳥木螺甸諸玩器 皆造辦之

④司設監 掌鹵簿儀仗帷幬諸事

⑤御馬監

⑥神宮監 掌太廟各廟酒掃香燈等事

⑦尚膳監 掌御膳及宮內食用并筵宴諸事

⑧尚寶監 掌寶璽敕符將軍印信 凡用寶 外尚寶司以揭帖赴監請旨 至女官尚寶司領收 監視外事用訖 存號簿繳進

⑨印綬監 掌古今通集庫 并鈔卷誥敕貼黃印信勘合簿驗信符諸事

⑩直殿監 掌各殿及廓廡掃除事

⑪尚衣監 掌御用冠冕 袍服及履屐靴襪之事

⑫都知監 舊掌各監移行 關知 勘合之事 後惟隨駕前導警蹕」

① 司禮監의 職掌은 餘他 衙門과는 달리 職銜에 따라 職務의 내용이 구분되어 있다. 즉 提督太監은 皇城內의 일체의 儀禮와 刑名을 관장하고 長隨 當差 聽事 등 屬官과 關防門禁을 엄중히 취체하며 光祿寺의 供應을 독려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여기서 儀禮·刑名이라 함은 『太祖實錄』 洪武 17年條 司禮監의 職掌에

「掌官廷禮儀 凡正旦冬至等節 命婦朝賀等禮 則掌其班位儀注 及糾察內官人員違犯禮法者」

라 한 바와 같이 正旦이나 冬至 등 節期에 內外 諸命婦가 행하는 朝賀 등에 관한 禮儀 즉 그 班位나 儀注를 관장하고 宦官 중에서 禮法에 違犯하는 者를 糾察함을 그 임무로 하였다.

掌印太監은 內外的 章奏와 御前勘合을 관장하였는데 勘合이란 발송할 公文書의 한 끝을 原簿에 대고 그 위에 얼러 찍는 도장을 말하며 보통 年月日과 號를 새긴다. 乘筆 隨堂太監은 章奏 文書를 관장하고 內閣의 票擬를 대조하여 批硃 즉 批答하는 것이었다. 票擬란 臣下의 上奏文을 皇帝가 친히 朱筆로서 결재하는 것인데 원래 皇帝 앞으로 올리는 上奏文은 內閣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內閣의 의견서인 條旨와 上奏 사항에 대해 내릴 결재의 原案인 票擬를 작성하는데 이때에 皇帝는 內閣에서 올린 條旨에 의해 可否를 판단하고 票擬를 기준으로 批答을 朱書한다.⁵²⁾ 그러나 皇帝는 上奏文 가운데 몇개만을 朱書하고 나머지는 모두 乘筆太監이 나누어 代行하였다.

52) 谷光隆: 「成化時代における司禮監の地位」(『東洋史研究』13-3, 1954), pp.1~17 參照

즉 『明通鑑』 卷 19 宣德 元年 7月條에

「凡每日奏文書 自御筆親批數本外 皆秉筆內官遵照閣中票擬字樣 用硃筆批行 遂與外廷交結往來矣」

라 하였으며 이것이 곧 宦官에게 專權의 기회를 주게 된 원인이 되었다. 宦官專權이 심한 때는 이러한 票擬조차 없는 때도 있었다.⁵³⁾ 이렇게 보면 明代 司禮監이 內閣을 압도하게 된 요소가 이미 제도상에 內在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즉 黃宗羲는 이러한 原因을 太祖가 丞相을 폐지한 過誤 때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後世에 內閣에 들어가 일을 맡은 자는 宰相의 名稱은 없어도 宰相의 實權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內閣에 들어가 일하는 者의 職務는 天子의 批答을 草하는데 있었으니 官廳의 書記와 같은 것이었다. 그 하는 일이 가별고 批答의 내용도 반드시 宮中에서 지시한 후에 草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實權이 있었다고 하겠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宰相의 實權이 있는 것은 지금의 宮奴 즉 宦官이다. 생각컨대 君主의 大權은 어디엔가 의지하는데가 없을 수 없다. 저 宦官이라는 자들은 宰相의 정치가 땅에 떨어져 收拾할 수 없음을 보고 그것을 이용하여 法命을 만들고 그들의 職責 權限을 늘리고 生殺與奪과 같이 宰相의 權限이었던 것을 점차로 다 자기들의 손에 넣었다. 明代의 內閣에 있는 者는, 그 중의 賢者는 宦官의 權勢의 남은 찌꺼기를 얻어받고 不賢者는 그들의 喜笑怒罵에 뒤따랐는데 이것을 市井의 사람들이 서로 전하고 史官이 歷史에 기록하여 그들의 宰相으로서의 업적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宦官으로 하여금 宰相의 實權을 갖게 한 것은 丞相을 廢止한 過誤때문이다.」⁵⁴⁾

② 內官監은 나라에서 營造하는 宮室이나 陵墓 따위의 諸般 土木 建築을 관장하였고 皇帝가 사용하는 銅·錫材의 粧奩(化粧道具) 등의 器具를 만든다. 이 때문에 지방에는 많은 出張所가 있었으니 劉若愚의『酌中志』卷 16에도

「外廠甚多 各有提督廠等官 如眞定設有抽印木植 寶抵縣收籽粒 西湖河差 大石窩白虎 間等處有提督 都是本監外差 而外方修建分封藩王府第 也是本監外差」

라 하여 外廠이 많았고 內官監에서 提督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그리고 外方に 分封된 藩王의 府第를 修建하는 일까지도 本監에서 提督 따위를 파견하여 담당케 하였다. 그런데 內官監의 權限은 많이 司禮監으로 넘어간 것 같다. 그것은 沈德符의 『野獲編補遺』 卷一에

「內官監視吏部 掌升選差遣之事 今雖稱清要 而其權俱歸司禮矣」

53) 丁易의 前揭書 p.10.

54) 全海宗의 前揭書 pp.35~36.

라 한데서도 알 수가 있다.

원래 土木·建築 등의 工事에는 항상 汚職이 따르기 마련이다. 때문에 宦官들이 가장 눈독을 들여 그들의 私慾을 채우는 곳이 토목·건축 등의 공사였다. 그 例로서 天啓元年 慶陵의 공사 비로 皇帝가 무려 金 50萬兩을 지급했는데 그 중 8萬兩을 宦官이 착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世評에 의하면 宮廷用 건물 建具類의 가격이 民間의 수백배라고 하였다. 즉 乾清宮의 간막이 하나를 修理하는 데도 銀 5千兩이 들었는데, 宦官은 이 액수로는 불만이었다고 한다. 즉 이 가격에는 外省의 人夫와 工事長의 웃돈이 포함되어 있어서 宦官이 利益이 그 만큼 적었기 때문이다. 55)

③ 御用監은 皇帝 專用的 屏風 牀榻 등의 諸木器와 자단, 상아, 오복, 나전 등의 諸玩器를 만드는 곳이다. 御用監도 宦官들의 私慾을 채우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甜食房과 條作이 예속되어 있었다. 56)

④ 司設監은 皇帝가 巡幸할 때에 鹵簿와 儀仗 帷幙 등의 諸事와 宮廷에서 사용하는 夏·冬用의 발(簾), 우산 등의 기구를 만드는 곳이다.

⑤ 御馬監에 대해서는 『明史』 職官志 宦官條에 그 職掌의 내용이 보이지 않으나 同書 卷 92 兵志 4에 의하면

「明制 馬之屬內廐者曰御馬監 中官掌之牧於大壩 蓋倣周禮十有二閑意」

라 한 것 처럼 宮中の 內廐를 관장하였다. 즉 明代에 있어서의 馬政은 太僕寺 苑馬寺가 관장하였으나 宮中の 內廐만은 御馬監이 관장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예속된 草場(牧場)이 城外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沈德符의 『野獲編補遺』 卷一에는

「御馬監雖最後設 然所掌乃御廐兵符等項 與兵部相關 近日內臣用事 稍關兵柄者 輒改御馬銜以出 如督撫之兼司馬中丞 亦僭擬甚矣」

라 하여 12監 중에서 가장 늦게 설치되었다고 하였으나 『明史』의 記載와는 다르며, 御廐兵符를 관장한 바 兵部와도 관련이 있어서 兵柄을 친 宦官의 專權이 심했다고 하였다.

⑥ 神宮監은 太廟와 歷代 皇帝의 位牌가 있는 靈廟의 청소와 쯤이나 燈火를 다는 것이 임무였다. 太廟는 紫禁城南端의 동쪽에 있었으며 끝에는 歷代의 靈廟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2·5·8·11월의 초하루에 皇帝가 참배한다. 그리고 本監의 長인 掌印太監은 司禮監의 屬官이나

55) 三田村泰助의 前掲書 p.68.

56) 『明史』 職官志 宦官條에는 甜食房과 條作의 職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記載하고 있다.
「甜食房 掌造辦虔眼 窩絲等糖及諸甜食」 「條作 掌造各色兜羅緘及諸緘綬」

文書房의 無力者를 승진시켜 임명했다. 57)

⑦ 尙膳監은 皇帝의 先祖를 祭祀하는 奉先殿에의 하루 세번의 供膳, 宮廷內의 식사 연회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皇帝의 식사는 宦官 가운데 司禮監의 掌印·秉筆太監, 東廠의 提督 등이 교대로 감독하여 올리게 되어 있었다. 58)

⑧ 尙寶監은 皇帝가 사용하는 寶璽 敕符 將軍印信을 관장한다. 원래 明代에는 宦官衙門인 尙寶監 外에 外官의 尙寶司 女官의 尙寶司 등 3종이 있었다. 外官 尙寶司는 前代의 符寶郎에 해당하며 寶璽 符牌 印章을 관장한다. 사용하는 玉璽는 「皇帝奉天之寶」를 비롯하여 24種이⁵⁹⁾ 되며 外尙寶司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서 女官의 尙寶司는 內尙寶司 또는 尙寶司라 하며 주로 玉璽를 보관한다. 玉璽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外尙寶司에서 사용허가의 公文書(揭帖)를 우선 尙寶監에 제출하고 尙寶監 소속의 宦官이 이를 女官의 尙寶司에 보이고 玉璽를 받아서 찍는다는 수속을 거치게 된다.

⑨ 印授監은 爵位授與의 辭令 公文書 符節 등을 보관하는 일을 맡는다.

⑩ 直殿監은 皇極殿을 비롯하여 外廷의 公式用 宮廷 등의 소제를 담당한다.

⑪ 尙衣監은 御用의 冠冕 袍服 履屨 및 靴襪 등을 만드는 일을 맡는다.

⑫ 都知監은 皇帝가 外廷으로 나올 때 수행하거나, 앞에서 行人을 정지시켜 조용하게 하는 등 경계의 임무를 맡았다. 本監은 宦官衙門 중에서 最下의 衙門이며 소속 宦官은 겨울에는 寒苦를 견디어야 하는 등 일이 苦되었으며 陞轉하기가 어려웠다. 60)

이상이 12監의 職掌에 관한 것이며 다음 4司에 대해서는 역시 前揭書에 다음과 같이 記載되어 있다.

「①惜薪司 掌所用薪炭之事

②鐘鼓司 掌管出朝鐘鼓 及內樂傳奇過錦打稻諸雜戲

③寶鈔司 掌造粗細草紙

④混堂司 掌沐浴之事」

① 惜薪司는 宮廷에서 사용하는 薪이나 木炭을 취급하며 때문에 여기에는 外廠을 비롯한 諸廠이 있었다. 그리고 宮廷 下水溝의 청소나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水槽에 물을 채우는 일도 맡았다. 그런데 宮廷 專用의 솥은 탄산가스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 乳母가 추위를 막기 위해 다량으로 피워서 皇子나 皇女들이 자주 窒息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61)

57) 丁易의 前揭書 p.17.

58) 三田村泰助의 前揭書 pp.69~70.

59) 『明史』 卷74 職官志3 尙寶司條 參照

60) 丁易의 前揭書 p.18.

61) 三田村泰助의 前揭書 pp.71~72.

② 鐘鼓司는 皇帝가 外廷으로 외출할 때 화려한 복장으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先導한다. 端午날의 闖龍舟라든가, 歲暮의 追難, 日月食 때 재앙을 쫓기 위해 큰 북을 두드리는 것도 그 職掌으로 하였다. 또 이 때에는 각종의 演戲가 동반되었으며 때문에 「學藝官無定員」이라 한 것처럼 많은 수의 學藝官이 예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本司는 內職 중에서 가장 賤視되었으며 內廷에 같이 끼지 못하여 東衙門이라고도 하였다. 또 本司에 들어가면 他遷할 수가 없었다. 62)

③ 寶鈔司는 宦官들이 사용하는 휴지를 만드는 곳이다. 皇帝가 사용하는 것은 內官監에서 만들어졌다.

④ 混堂司는 宦官들을 위한 沐浴湯이었다.

끝으로 8局에 대해서 보면 前揭書에

「①兵仗局 掌製造軍器 火藥司屬之

②銀作局 掌打造金銀器飾

③浣衣局 凡官人年老及罷退廢者 發此局居住 惟此局不在皇城内

④巾帽局 掌宮內使帽靴 駙馬冠靴及藩王之國諸旗尉帽靴

⑤鍼工局 掌造宮中衣服

⑥內織染局 掌染造御用及宮內應用緞匹 城西藍 廠爲此局外署

⑦酒醕麵局 掌宮內食用酒醕 糖醬麵豆諸物 與御酒房不相統轄

⑧司苑局掌蔬菜 瓜果

① 兵仗局은 각종의 武器를 제조하며 火藥司도 여기에 속했다. 明代에는 火器만은 宦官이 취급했으며, 전쟁이 있을 때는 火器軍은 일반 군대에 없으므로 宦官이 통솔한다. 63) 明廷이 宦官을 신용하고 중시한 例의 하나라 할 것이다.

② 銀作局은 皇帝가 臣下에게 상으로 내리는 각종 형태의 金·銀器를 만든다.

③ 浣衣局은 宦官衙門 중에서, 홀로 皇城內에 없고 內城의 要地에 해당하는 德勝門 서쪽에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女官 중에서 年老한 자, 혹은 罪를 지어 물러나게 된 자가 거주했다. 말하자면 餘生을 돌보아 주는 곳이다. 이는 宮廷 내부의 비밀이 외부에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64)

④ 巾帽局은 宦官이 사용하는 帽靴 駙馬가 사용하는 冠靴 및 藩王國의 諸旗尉가 사용하는 帽靴 등을 만든다.

⑤ 鍼工局은 宮中 衣服을 만드는 일을 관장한다.

62) 丁易의 前揭書 p.18.

63) 同上書 p.255 提督京營條 參照.

64) 同上書 p.18.

- ⑥ 內織染局은 皇帝와 宮廷에서 사용하는 絹類를 염색하는 일을 맡는다.
- ⑦ 酒醋麵局은 宮內 食用의 酒醋 糖醬 麵豆 등의 물건을 관장한다.
- ⑧ 司苑局은 蔬菜 瓜果를 관장한다.

이상이 이른바 廿四衙門의 職掌 내용이며 이외에도 皇室 倉庫에 속하는 內府供用庫 이하의 各庫, 御酒房 이하의 各房이 설치되었으며 掌印 내지 提督太監이 관장하였다. 이렇게 보면 광대한 紫禁城은 일반 백성의 世界로부터 격리된 별천지이고 거기에 있는 무수한 宦官들이 帝王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고 연출하며 운영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의 權力增大의 장소가 되었다.

V. 結 言

이상에서 明代의 宦官 廿四衙門에 대해 그 設置過程과 組織 및 職掌을 살펴 보았다. 中國 歷代王朝 중에서 明代만큼 宦官衙門이 복잡하고 그 組織이 방대했던 王朝는 없었다.

물론 개중에는 임시직도 적지 않았으며 前代까지만 해도 일반관리가 관장했던 것을 宦官衙門으로 전환시킨 것도 많았다.

廿四衙門이란 宦官의 諸衙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12監 4司 8局을 總稱한 것이다.

그런데 이 廿四衙門은 一時에 설치된 것은 아니며, 太祖 一代에 걸쳐 정비되고 있다. 따라서 洪武末年에 와서는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나 그 후도 「祖制」를 중심으로 약간의 改變이 가해지고 있다. 즉 成祖 18年 北京遷都 이후 南京에도 北京과 꼭 같은 官制 人員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宦官 廿四衙門도 정비되어 일단 完成을 보게 된 것이다.

따라서 廿四衙門의 組織도 洪武舊制 이후 많은 改變이 가해지고 있다. 즉 洪武舊制인 경우 職官에 있어서는 12監에 太監 少監 監丞 등 高級宦官과 典簿 長隨 奉御 등 下級宦官으로 나누어지고, 4司에는 司正과 司副, 8局에는 大使와 副使가 각각 설치되었으나 定制 이후에 와서는 각 衙門이 맡은 職務에 따라 여러 가지 職銜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司禮監의 경우 提督, 掌印, 秉筆, 隨堂太監이라 한 것 등이다.⁶⁵⁾

品秩에 있어서는 洪武舊制와 그 이후에 와서 별다른 변동이 없이 最高 職位인 太監이 正四品으로 外省에 비하면 各省의 次官 다음가는 높은 것이었다. 그리고 洪武舊制인 경우에 어느 정도 定員이 정해져 있었으나 그 이후에 와서는 각 衙門의 需要度에 따라 대폭 증가하고 있다. 예로서 憲宗 成化年間に 와서는 각 衙門의 宦官만도 萬에 달하였으며, 明末에 이르러서는 각

65) 同上書 p.7 에는 司禮監 太監으로는 掌印과 提督太監이 各 1人, 秉筆·隨堂太監은 합쳐서 8.9人이나 된다고 하였다.

衙門 소속의 宦官과 地方에 分散되어 있는 宦官을 합치면 무려 十萬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불어난 것이다.

明代에는 대체로 異國人的 俘虜나 貢進者 및 志願者에 의해 宦官이 충당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志願者가 해마다 증가한 현상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혹한 육체노동을 피해서, 혹은 富貴를 꿈꾸어서 志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예로써 熹宗 天啓元年 缺員을 보충하기 위해 宦官 3千人을 모집했을 때 志願者가 무려 2萬이나 되었다는 사실이다. 朝廷에서는 할 수 없이 예정 인원에서 千5百人을 늘려서 4千5百人을 채용했는데 그래도 落榜者가 萬5千이나 된 것이다.

이로써 보면 당시 宦官의 威勢가 어떠한가를 推知할 수 있으며 또한 賤民들에게는 한결 憧憬이 되었던 것이다.

明代 宦官의 各個 衙門을 통할한 것은 司禮監이었다. 司禮監은 원래 宮廷內的 禮儀를 관장했으나 뒤에는 宦官의 糾察이나 內外章奉, 御前勘合, 關票批硃까지도 관장하게 되면서 그 地位, 權勢가 政權의 中추부에 이르게 되었고, 「眞宰相」「陰의 內閣」이란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參 考 文 獻

- 張廷玉 『明史』(서울 景仁文化社 1977)
- 谷應泰 『明史紀事本末』(臺北 三民書局 1969)
- 夏 燮 『明通鑑』(北京 中華書局 1980)
- 黃宗義 『明夷待訪錄』(臺北 新興書局 1959)
- 李東陽 『大明會典』(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6)
- 趙 翼 『廿二史劄記』(臺北 中華書局 1968)
- 丁 易 『明代特務政治』(東京 汲古書院 影印版 1971)
- 陶希聖·沈任遠 『明清政治制度』(臺北 商務印書館 1977)
- 杜乃濟 『明代內閣制度』(臺北 商務印書館 1969)
- 三田村泰助 『宦官』(東京 中公新書7 1963)
- 山本隆義 『中國政治制度の研究』(京都 東洋史研究會 1968)
- 全海宗譯 『明夷待訪錄』(서울 三星文化 文庫 1971)
- 清水泰次 『明代の宦官』(『史觀』1 1931)
- 同 『自宮宦官の研究』(『史學雜誌』43の1 1932)
- 谷光隆 『成化時代に於る司禮監の地位』(『東洋史研究』13の3, 1954)
- 黃彰健 「論皇明祖訓錄所記明初宦官制度」(『歷史語言研究所集刊』32, 1960)
- 吳緝華 「明仁宣時內閣制度之變與宦官僭越相權之禍」(同上 31, 1959)
- 間野潛龍 「明代の光祿寺とその 監察仁について」(『東洋史研究』29~2・3 1970)

A Study of Eunak's Authority of Ming Dynasty

Ko Chang-seok

Eunuch, a castrated human male. Castration as a form of punishment was practised from remote antiquity in the far and middle east, and eunuchs were employed as palace officials. Their position as the personal servants of a ruler might well lead to considerable personal influence over the ruler himself, and they came to be used as the confidential assistants of rulers. Eunuchs were almost always castrated either for a crime or in childhood after having been sold by poor parents; they were, therefore, people who were completely dependent on and owed everything to their ruler. Eunuchs were used as political advisers in china during the Chou (周) period, and also under the Han (漢), T'ang (唐) and Ming (明) emperors. The founder of the Ming dynasty, T'ai-tsu (太祖), considered the evil of the eunuchs in the Han and T'ang dynasty and prohibited their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 most representative of Eunak's many authorities of Ming (明) Dyansty were generally termed Twenty-four Authorities, which were controlled by Ssu-il-chien (司禮監). And these authorities were fully organized in T'ai-tsu (太祖), but they were a little changed after that time. The first position of Twenty-four Authorities was called T'ai-jian'n (太監), and their rank was comparatively high. At first the number of them was fixed, but lastly it was increased according to each authorite's need. The important affairs of those Authorities were to take charge of whatever the life of the king needed.